

아리야리! 정선
the mecca of arirang, jeongseon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jeongseon.go.kr/>

제351호 2015. 3. 18. (수)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15-17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1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15-188호 「2015년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참여단체 공모 · 2
- 정선군 공고 제2015-196호 2015년 그린홈 보급사업 공고 11
- 정선군 공고 제2015-199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안) 23
- 정선군 남면 공고 제2015-1호 2015 상반기 남면복지회관 교양강좌 수강생모집 공고 .. 26
- 정선군 남면 공고 제2015-2호 2015 상반기 남면복지회관 교양강좌 강사모집 공고 27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24, FAX:560-2592)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15-17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3. 5.

정 선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 1건

연번	토지소재지(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1	정선군 정선읍 덕송리 592-2	정선군 정선읍 송오다래길 11	2015.3.5	법정리(송오리)명과 자연마을명인 다래를 이용하여 명명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민원봉사과(☎560-2184)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도로명주소 폐지 후 건물 신축 등으로 새로이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때에는 「도로명주소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가 건물번호 부여신청을 하여야 하며,
-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에 드는 비용은 건물 등의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15-188호

「2015년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참여단체 공모

정선군은 문화소외지역 주민을 포함한 소외계층 주민들을 위해 직접 찾아 가는 적극적인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5년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선군에서 공연을 희망하는 공연예술단체의 신청을 공모하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15년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15. 4.~12월
- 사업내용: 4분야 공연예술(연극, 무용, 음악, 국악분야)
- 예산규모: 14,400천원

2. 신청분야 및 문화활동 대상분야

- 신청분야: 4분야의 대중적 공연예술
 - － 연극: 연극, 인형극, 마당극, 뮤지컬 등
 - － 무용: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 － 음악: 오페라, 관현악, 실내악 등
 - － 국악: 전통타악합주, 관현악, 실내악, 풍물놀이 등
- 문화활동 대상분야
 - － 오지마을·학교,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청소년·장애인(학교, 보호시설 등) 등
 - － 병동 프로그램(어린이, 정신병동 등), 교정시설(재소자), 중소기업체 등

3. 지원규모: 공연당 3~4백만원 지원 검토

※ 신청서상의 지원내역을 검토, 최종 지원액 결정

4. 신청자격 및 심사기준

- 신청자격
 - － 지역 내에서 공연을 희망하는 강원도에서 활동 중인 공연단체 선정
 -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 소외시설, 오지 등에서 공연이 가능한 단체 등 기타

〈 신청 제외단체 〉

- 국·공립 및 방송국 소속의 공연단체
- 학생(청소년 등) 들로 구성된 동아리나 비전문 동호인 단체
- 학교나 종교단체 소속의 예술단 등
- 심사기준 및 심사시 고려사항
 - － 신청자의 사업수행능력과 활동실적, 연출진의 전문성, 출연진의 예술적 기량
 - － 공연계획의 충실성·타당성·대중성, 공연의 작품성·예술성·발전성
 - － 작품과 공연 홍보, 관객 개발 등을 위한 홍보계획 등
 - －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독창적이고 완성도 높은 공연작품 우선 고려
 - － 준비계획에 의해 사전 창작된 우수 공연물을 우선 고려
- 심사방법
 - － 신청서류, 필요시 CD 등 공연자료, 기타 참고자료의 심사
 - － 분야별, 단체 및 공연내용 등을 고려, 공연 희망지역과 공연 횟수 조정

5. 신청서 접수

- 제출서류
 - － 2015년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신청서 1부
 - － 필요시 공연내용물 CD, 기타 참고자료 등
- 신청서 접수
 - － 접수기한: 2015. 3. 18. (직접 제출 또는 당일 우편소인 유효)
 - － 접 수 처: 정선군 문화관광과 (주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 ※ 담당자 이 종 찬 (Tel 033-560-2562. Fax 033-560-2953)

2015. 3. 9.

정 선 군 수

2015년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1.지원신청분야		연극, 무용, 음악, 국악 (해당분야에 ○표)		2. 신청분야	
3. 신청사업명					
4. 기 간			5. 장 소		
6. 총소요액			7. 지원신청액		
8. 사업취지 및 목적					
9. 지 원 신 청 인	단 체 명		(직인)		
	우편번호/주소		□□□-□□		
	(전화번호)		☎(-) - FAX(-) -		
	대표자명		(한글:) (한자:) (인)		생년월일
	우편번호/주소		□□□-□□		
	(전화번호)		☎(-) - FAX(-) -		
	사무담당자명		(인) ※ 사무연락이 용이한 사람으로 기재함.		
	우편번호/주소		□□□-□□		
	(전화번호)		☎(-) - FAX(-) - HP :		
단체현황		창립연도 : 년		총 인 원 : 명 (임원 명, 일반회원 명)	
10. 첨부서류 및 자료목록					
- 창작일 경우 극작가 또는 작곡가 등 참여 확인서 - 창작이 아닌 경우 저작권 관련 계약서(저작권자 사망 70년 또는 현존자의 저작물과 법인·단체의 저작물로서 공포된지 70년이 지나지 않은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 대본, 시나리오, 악보, 총보, 비디오, 오디오, 팜플렛, 사진, 신문기사 등					

※ 본 양식은 복사하시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PC 또는 타자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경우 정서하여 주십시오.

정 선 군 수 귀하

11. 세부사업계획

- ※ 심의시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되는 부분이니 신청사업에 대하여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고, 관련자료를 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A4 용지를 별지로 사용하여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작 품 개 요 >

◎ 작 가

대본작가	성명		연출·안무	성명	
작곡가	성명				

- ※ 창작일 경우 작가나 작곡가 또는 연출·안무가 등 참여 확인서와 대본(시나리오, 악보, 총보 등) 등 증빙물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 ◎ 작품 주제 및 연출, 안무의도 : 핵심 개념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별지 사용 가능)

--

◎ 작품 줄거리

- ※ 음악분야의 관현악,실내악,교성곡(국악분야는 관현악, 실내악, 전통타악합주)의 경우 악기편성,협연,독창,합창파트 구성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작품해설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 무용의 경우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과 몇 개의 장면과 막으로 구성되는지를 적고, 각 장면에서의 주요 개념, 정조, 분위기 등과 장면들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

12. 홍보계획

※ 공연작품소개, 공연홍보, 관객개발 등을 위한 홍보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13. 주요제작진 및 출연진

※ 역할란에는 연출자, 안무자, 지휘자, 공연스텝, 중요 출연배역 순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 주요 스탭진 및 출연진 등의 참여 확인서를 첨부해 주십시오

※ 교향악단, 실내악단, 합창단, 전통타악합주단 등의 경우 악기 파트별, 성역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무용의 경우 비고란에 주요 무용수 활용계획(무용수의 중요한 이미지, 테크닉, 작품기여도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인원이 많은 경우 주요 참가자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인원 수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성명	역할	성별	연령	현직 및 소속	비고

14.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 조달방법란에는 예산항목별 소요예산을 지방비 등(도비, 시군비), 문예진흥기금, 자체자금, 사업수입금, 협찬금, 기타수입금으로 구분 기재하십시오(특히 도비와 시군비 등 지원금의 사용계획을 명확히 기재)

구분	예산항목	총소요액	산출근거
합 계			

15. 연혁 및 활동실적 (최근3년간의 주요활동만 기재)

※ 기재사항은 그 동안의 단체활동실적을 통해 단체의 사업수행 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니 상세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해 드리지 않기 때문에 원본 자료가 없는 경우는 사본을 제출하셔도 됩니다.

기 간	내 용	비 고

※ 작성란이 부족할 때에는 양식을 복사하여 사용하거나 자료를 별도 첨부하십시오. 끝

□ 지원신청서 각 항목별 기재방법

(번호는 지원신청서 양식 중 기재 항목에 부여된 번호와 동일함)

※ 작품심사 기준을 참고하여 심사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작성,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신청분야: 연극,무용,음악,국악 분야 중 해당분야에 ○표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분야: 앞의 지원대상에 각 분야별로 적시한 장르를 기재하는 난으로 무용의 경우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중 해당 분야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사업명 : 지원신청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업명을 기재하는 난입니다.  예 : o o o 공연
4. 기 간 : 실제 사업이 시작되는 일자부터 끝나는 일자를 기재하는 난입니다.
 예 : 2015. 6. 6. - 6. 17.
- ※ 실제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현지도착 일자나 사업이 끝난 후 마무리기간 등 세부 일정은 지원신청서 11번 세부사업계획 난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5. 장 소 : 실제 사업이 수행되는 장소를 기재하는 난입니다.
 예 : 정선노인요양원, 정선프란치스코의집
- ※ 사업이 지원신청 지방자치단체내 여러 지역을 순회하여 개최되거나 여러 장소에서 분산되어 개최될 경우에는 구체적인 일정 및 장소를 11번 세부사업계획 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 2015. 6. 6.-6. 7. : 정선읍 OO 경로당
2015. 6. 8.-6. 10. : 고한읍 OO 경로당
6. 총소요액 :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전체 금액을 기재하는 난입니다.
7. 지원신청액 : 총 소요액 중 “2015년도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의 예산을 지원받고자 신청하는 금액을 기재하는 난입니다.
8. 사업취지 및 목적 :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기재하는 난입니다. 칸이 부족할 경우 11번 세부사업계획에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9. 지원신청인

◎ 신청인이 ‘단체’일 경우 → 모든 난을 기입하시고 해당난에 날인하시면 됩니다.

※ 직인 및 대표자 도장을 날인

※ 특히 ‘대표자’와 ‘사무담당자’가 다를 경우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사무담당자’의 연락처를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만일 ‘대표자 = 사무담당자’일 경우는 사무담당자란에 “상동(上同)”이라고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 단체 현황란은 단체의 규모를 알고자 하는 난이므로 창립년도와 단체구성, 인원수 (임원,

회원)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고, 회원이나 예술단원의 명단이 있을 경우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첨부서류 및 자료목록

- ◎ 지원신청자가 지원신청사업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첨부하는 자료의 목록을 기재하는 난입니다.
- 신청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자료(신문,잡지에 게재된 기사내용 복사)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시·도로부터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받은 예술법인·단체 및 기획사에는 전문예술법인·단체지정서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 세부사업계획

- ◎ 지원신청하는 사업에 대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입하는 난으로서, 작품 심사시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되는 부분이니 다음과 같이 필수기재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명확히 기술되지 않은 사업은 작품 심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과 추진방법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

12. 홍보계획

- ◎ 지원심사시 필요한 홍보계획을 기재하는 난입니다. 작품 및 공연홍보, 관객개발 계획 등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13. 주요제작진 및 출연진

- ◎ 주요제작진 및 출연진은 지원심사시 필요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심사 선정이후 단체가 출연자를 일방적으로 교체 할 경우, 지원금 교부·지원시 조건 불이행 등의 이유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니 작성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 ◎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전체 예산규모와 그 중 신청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자 하는 항목의 금액을 표기하는 난으로 사전조사를 통한 정확한 내역과 산출근거를 기재하여야 하며, 추측에 의한 산출근거는 작품심사시 불이익을 받습니다.
- ◎ 특히, "지원신청시" 총사업비와 심사선정 후 "교부신청시" 총사업비 차이가 많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사업비 산정시 가급적 실제 소요되는 예산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신청자의 사업을 지원하기로 확정할 경우, 지원액의 산정은 이를 근거로 하여 결정되오니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확한 금액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조달방법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의 지원금은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 소요액은 지원신청자가 확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총소요액 중 지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구분에 “보조금(도비, 시군비)”이라고 기재하여 주시고, 다

른 단체나 업체로부터 보조를 받거나 자체자금으로 부담할 금액은 아래의 작성예시와 같이 구분 표기 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예시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항목	총소요액	산출근거
합 계		15,000	
보조금	대관료	5,000	1,000,000원×5일
	인쇄비	4,000	
	(포스터)	(1,000)	1,000원×1,000부
	(전단)	(1,000)	100원×10,000매
	(팜프렛)	(2,000)	2,000원×10,000부
자부담	공연제작비	6,000	
	(무대)	(3,000)	3,000,000원×1식
	(조명)	(3,000)	3,000,000원×1식

15. 연혁 및 활동실적

◎ 신청인이 ‘단체’일 경우 → 단체의 창립 등 연혁과 활동실적을 기재

※ 본 난은 그 동안의 단체활동실적을 통해 단체의 사업수행 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오니 상세히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해 드리지 않기 때문에 원본 자료가 없는 경우는 사본을 제출 하셔도 됩니다.

정선군 공고 제2015-196호

2015년 그린홈 보급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의 「2015년도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제2015-111호)」이 공고됨에 따라, 정선군 소재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린홈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3. 10.

정 선 군 수

1. 지 원 기 간 : 2015. 3. 10. ~ 군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2. 지 원 분 야 : 태양광, 태양열, 지열
3. 지원예정량 : 약6호
4. 지 원 예 산 : 금13,500,000원 (지방비 예산 소진시 까지)
5. 보조금 지원단가

○ 보조금 지원단가

에너지원	설비용량	보조금 지원단가	비고
태양광	3kW이하	2,000,000원	국비보조금 별도
태양열	4㎡초과 ~ 7㎡이하	1,000,000원	“
	7㎡초과 ~ 14㎡이하	2,000,000원	“
	14㎡초과 ~ 20㎡이하	2,500,000원	“
지열	10.5kW이하	2,800,000원	“
	10.5kW초과 ~ 17.5kW이하	4,000,000원	“

6. 지원대상자 선정 (개별주택)

- 가. 신청시기 : 에너지관리공단 그린홈 사업승인 이후
- 나. 신청주체 : 사업승인 주택소유자
- 다. 신청방법 : 군(지역경제과)에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
※ 보조금 교부신청서는 정선군 지역경제과 방문제출(우편제출 안됨)
- 라. 선정기준 : 군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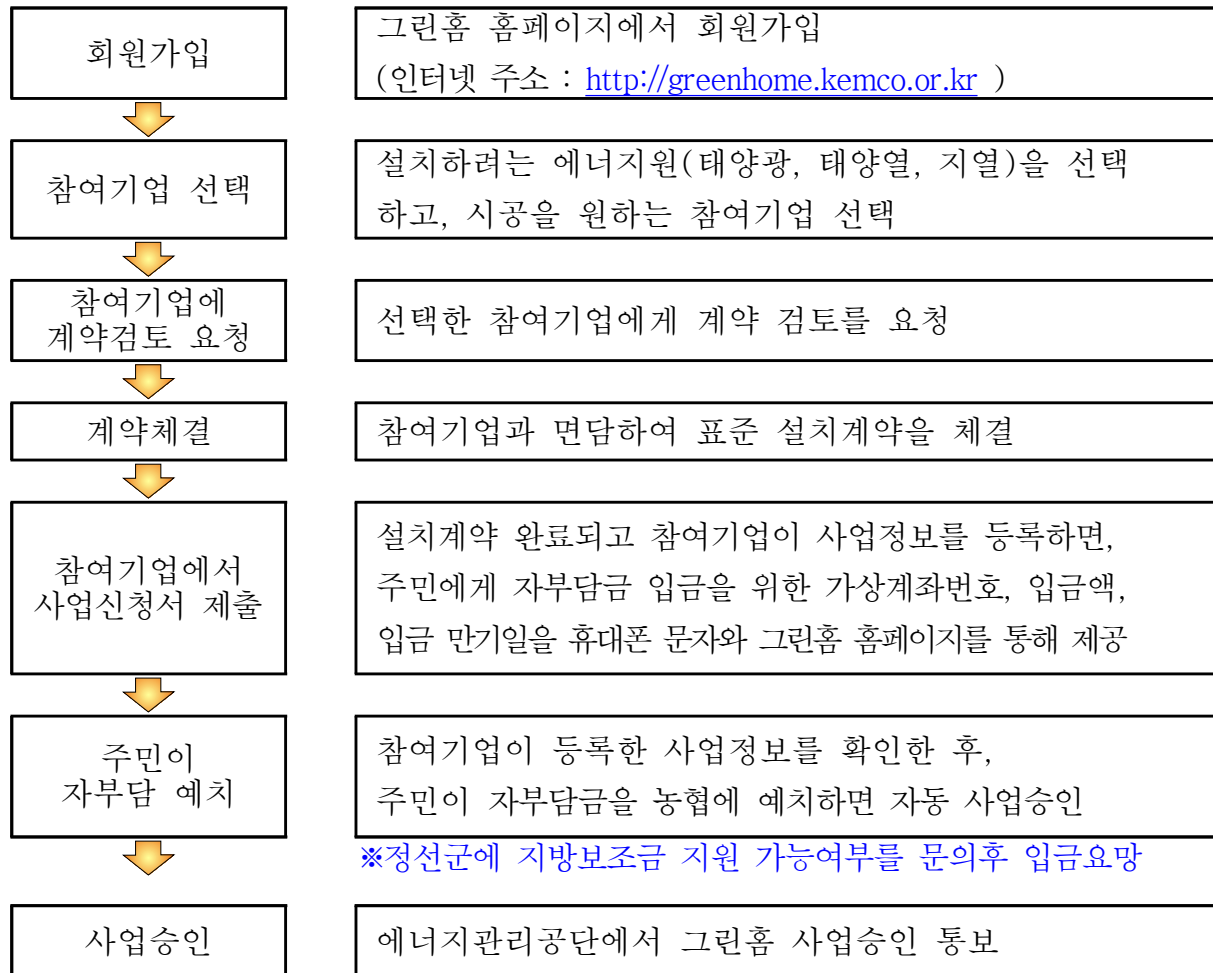
※ 에너지관리공단 그린홈 사업승인 이후에도, 군 예산이 소진될 경우에는 군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을 양지바랍니다.

※ 따라서, 에너지관리공단 사업승인 이후, 군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문의 후에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7. 지원방법 : 그린홈 설치가 완료되면 설치 주민에게 지방보조금을 직접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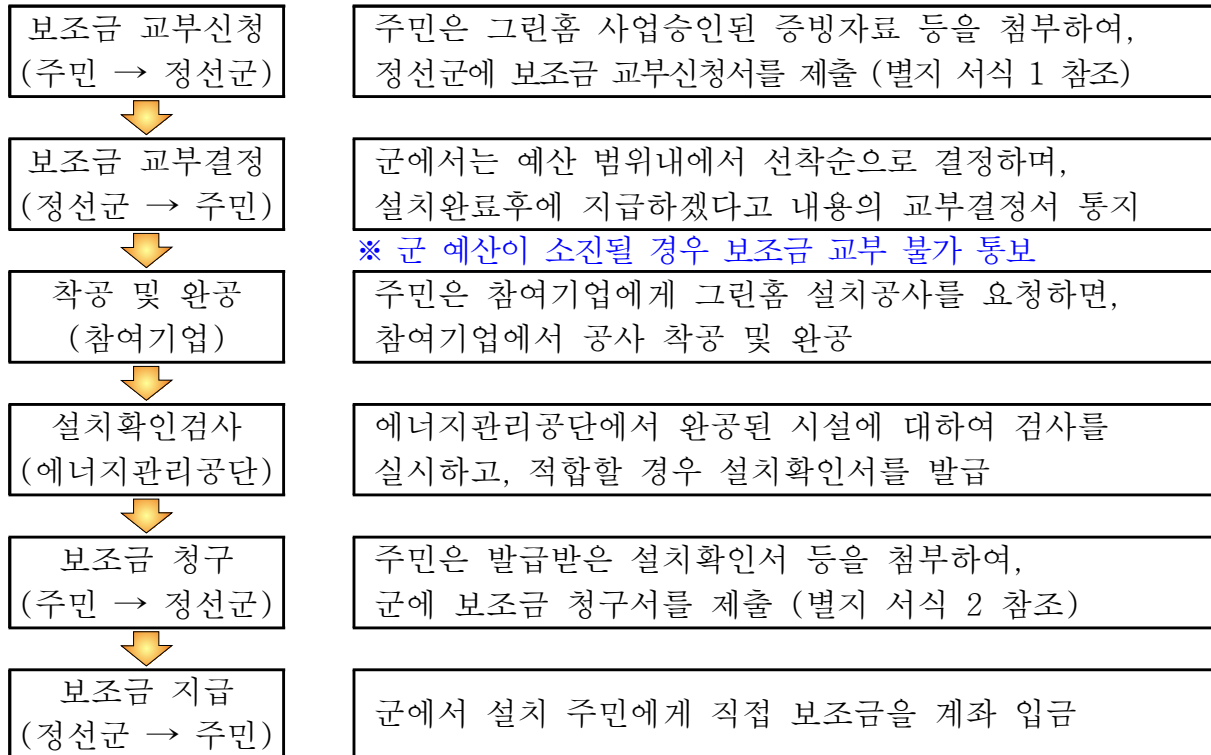
8. 그린홈 사업 추진절차

가. 에너지관리공단 사업승인 절차 (주민이 직접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먼저 이행)



- 주) 1. 에너지관리공단의 사업승인은 국비보조금 지원을 의미하는 것이며,
2. 정선군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군에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
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으셔야 하며,
3. 군 보조금 교부결정은 금년도 예산범위내에서 선착순으로 진행합니다.

나. 군 보조금 지원절차 (에너지관리공단 사업승인된 주택만 신청 가능)



※ 국비보조금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참여기업에게 직접 지급

9. 사업추진시 유의사항

가. 그린홈 설치 희망자는 그린홈(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하여야 하며, 시공할 참여기업을 직접 선택하고, 직접 계약하며, 주민 자부담금을 금융기관(농협) 가상계좌에 선예치 하셔야 에너지 관리공단의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2015년도 개별주택에 대한 사업신청 접수를 2회(3월, 4월)에 걸쳐서 접수받고 있으며, 사업승인은 선착순으로 진행 될 예정이므로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관리공단 공지사항 - 사업신청 및 처리일정】

기 간	진행내용	1차	2차
1~2주	참여기업 선택 및 계약 체결	3.9(월) ~ 3.20(금)	4.20(월) ~ 5.1(금)
2주	참여기업 서류제출 (선착순마감)	3.16(월) ~ 3.20(금) (매일 10:00~17:00)	4.27(월) ~ 5.1(금) (매일 10:00~17:00)
3~4주	서류검토 및 자부담금 납부(설치승인)	~ 4.3(금)	~ 5.15(금)

* 참여기업의 서류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예산 소진 시 까지(선착순 마감)

* 접수시간 : 매일 10:00 ~ 17:00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기상계좌 만료일(발급일로부터 7일)까지 신청자 기상계좌 예치금 미납 시 자동사업 취소다. 2015년 개별주택에 대한 지방비 지원은 에너지관리공단 사업승인된 주택에 한하여 선착순으로 교부결정하고, 설치 완료후에 지급할 예정 이므로, 사업신청 전에 정선군 지역경제과에 보조금 지원 가능여부를 문의 후 에너지관리공단에 사업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비 보조금 지원은 그린홈 설치가 완료되면 주민에게 직접 지급되기 때문에, 사업신청 당시 금융기관에 선예치하는 주민 자부담금은 실제 자부담액 보다 크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정선군은 그린빌리지(마을단위 10가구 이상)에 대한 지방비 지원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시공 참여기업별 설치금액, 시공능력, 제품사양 및 효율, 사후관리 (A/S)에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참여기업 선택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택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주택소유자)에게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그린홈 홈페이지 인터넷 주소 : <http://greenhome.kemco.or.kr>

아. 군 담당부서 : 정선군 지역경제과(☎ 560-2358)

※ 에너지관리공단 사업승인이 완료되는 즉시, 정선군에 보조금 교부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

사업실행계획서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15년 그린홈 보급사업
- 사업기간 : 2015. . ~ 2015. . .
- 소요예산

총 사업비	국비 보조금	지방비 보조금	자부담
원	원	원	원

2. 사업목적

정부정책사업인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과 연계한 정선군의 「2015년도 그린홈 보급사업」 에 참여하여 주택에 그린홈을 설치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녹색성장도시 조성에 기여

3. 주요사업내용 (그린홈 설치계획)

구 분	사 업 내 용
설 치 주 택 소 재 지	
에 너 지 원	☐ 태양광 ☐ 태양열 ☐ 지열
설 치 용 량	kW(m ²)
참 여 기 업 상 호	
설비형식(태양열에 한함)	☐ 단일진공 ☐ 이중진공 ☐ 평판형

4. 세부추진계획

단위사업명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고
설치공사	2015. 월 ~ 월	○ 그린홈 설치공사 착공 및 완공	
확인검사	2015. 월	○ 에너지관리공단인의 설치확인검사 수검	

5. 기대효과

- 고유가 시대 광열비 절감에 따른 서민생활안정
-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화석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별지서식2

※ 그린홈 설치가 완료되고 설치확인검사가 끝난 이후, 정선군에 보조금을 청구할 때 제출하는 서류

보조금 청구서

- ☐ 보조사업명 : 2015년 그린홈 보급사업
- ☐ 보조사업자 : (주민등록번호 :)
- ☐ 청구금액 : 금 원(금 원)
- ☐ 계좌번호 :

상기 금액을 2015년 그린홈 설치를 완료하고 보조금으로 정히
청구합니다.

2015년 월 일

청구자 : (인)

- 붙임 1. 설치확인서(에너지관리공단 발급분) 사본 1부.
2. 세금계산서(참여기업에서 발급분) 사본 1부.
3. 입금계좌 통장사본(본인에 한함) 1부.

정선군수 귀하

□ (주요 시공기준) 태양열 축열조 단열강화, 필수 설치 기준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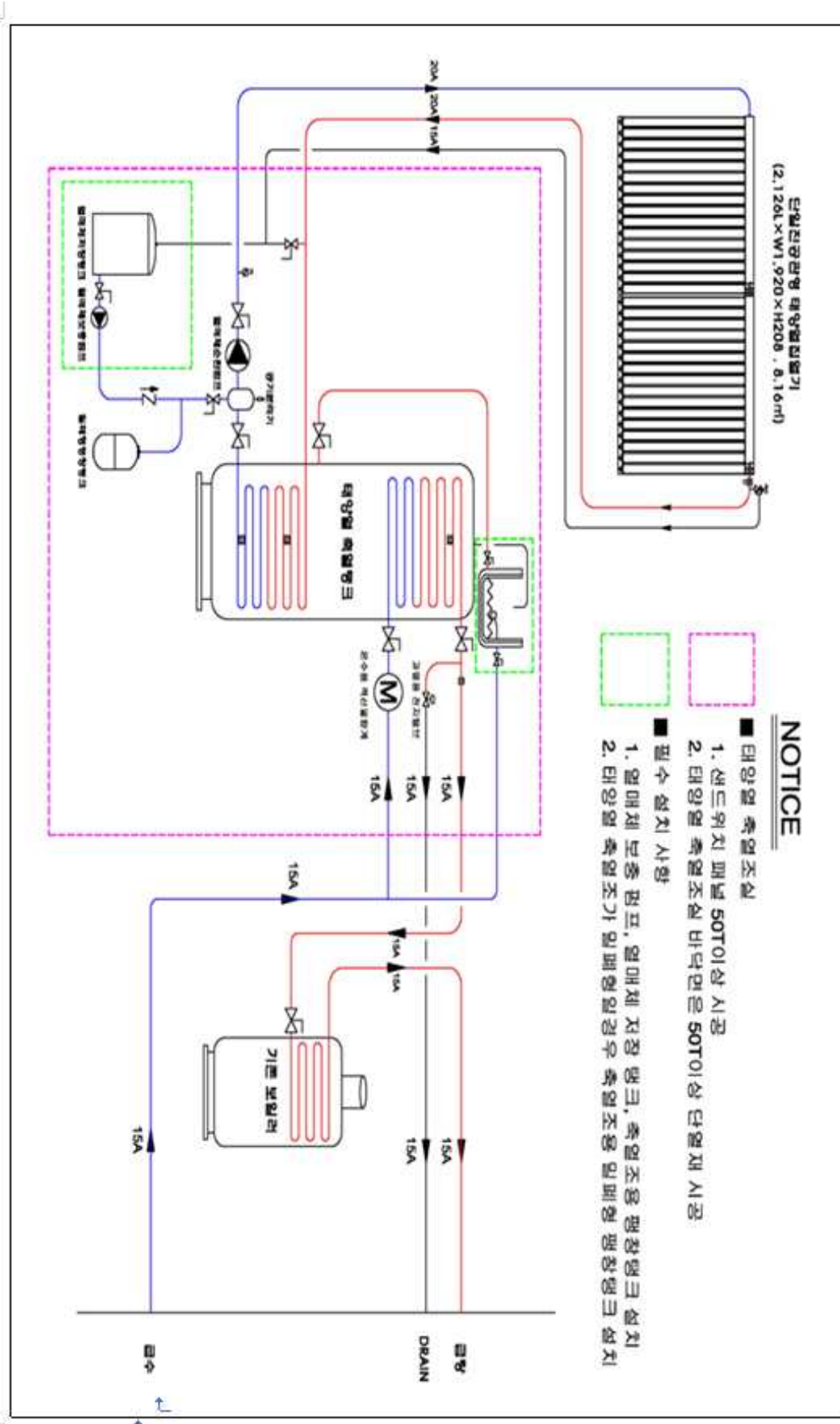
○ 단열 기준 강화 : 축열조실 샌드위치 패널 50T이상, 축열조 바닥면 50T이상 단열재 시공

○ 필수 설치 사항

① 열매체 보충 펌프, 열매체 저장탱크, 축열조용 팽창탱크 설치

② 태양열 축열조가 밀폐형일 경우, 축열조용 밀폐형 팽창탱크 설치

《태양열(온수전용) 설비 시공 기준》



참고사항

에너지관리공단 그린홈 사업승인 세부절차 안내

(그린홈 홈페이지 공지사항)

1. 신청자가 주택에 설치하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를 결정합니다.



<에너지원 선택>

⇒신청자 주택에 필요한 용도 따라 적합한 에너지원(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지원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 <사업소개>, <제품 및 기업소개>를 통해서 확인가능합니다.

※신청자는 주택지원사업 공고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합니다.

2. 신청자는 해당 참여기업을 결정한 후 계약검토요청을 합니다.



<계약검토 요청>

⇒설비의 설치가능여부, 설치비용(자부담), 경제적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참여기업을 결정합니다.

⇒신청자는 계약을 체결할 참여기업을 결정한 후 해당 참여기업으로 계약검토 요청을 합니다. (※ 유선통화 필수)

※계약검토요청은 시공분야별로 1회에 2개 기업에 한해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이 모두 되지 않은 경우, 다른 2개 기업에 계약검토 요청을 할 수 있음

※특정 참여기업의 과대홍보 등에 주의!

3.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 표준 설치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체결>

⇒참여기업이 계약검토요청 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참여기업과 계약을 체결 시, 표준 설치 계약서 내용, 설치용량, 설치 시 주의사항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해 안내받고 확인합니다. 특히, 자부담 금액, 설치모델, 무상 하자보수조건, 기타 계약 조건 등을 확인하고, 참여기업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조망권·일조권 침해 등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에 대하여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 에너지센터에서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합니다.

4. 참여기업이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 제출>

⇒신청자와 계약을 체결한 참여기업은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 기간을 엄수하여 신재생에너지센터로 제출합니다.

5. 신청자는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사업진행현황을 확인한 후 가상계좌에 가상계좌 예치금을 예치합니다.

자부담금 예치

사업승인

<예치금 예치>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참여기업이 제출한 사업신청서의 적합여부를 평가하여 신청서검토를 완료한 후 신청자에게 가상계좌 예치금 입금요청 및 가상계좌번호 발급안내 SMS를 발송합니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가상계좌번호를 직접 안내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주택지원 홈페이지 내 신청자마당 -> 사업진행현황 ->참여기업을 선택하여 가상계좌를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자는 가상계좌 만기일(발급한 일로 7일) 내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예치금을 예치합니다.

※가상계좌 만기일(발급한 날로 7일) 내 예치금 미입금 시 사업취소 처리되며, 분할납부 및 기간연장은 불가능합니다.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예치금을 예치하시면,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는 신청하신 사업에 대해 자동으로 사업을 승인합니다.

7. 참여기업은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사업승인을 받은 후 주택에 설비를 설치합니다.



<설비 설치>

⇒참여기업은 신청자 주택의 주변 환경 및 기초상태 등을 파악하여 규정에 적합하게 설비를 설치합니다.

※ 일조권, 조망권 등 민사상 분쟁에 관해 신재생에너지센터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참여기업은 에너지원별 사업완료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업공고 참조)

8.참여기업은 설비설치완료 후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치확인을 요청하며, 신청자는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가상계좌 예치금 지급동의를 합니다.

 <설치 확인>	⇒설비설치완료 후 참여기업이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치확인을 요청합니다.(http://www.energy.or.kr) ⇒설비설치확인이 완료되면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신청자에게 가상계좌 예치금 지급동의 SMS를 발송하고 신청자는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참여기업 평가 후 예치금 지급 동의여부를 확인합니다. ※설치완료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는 신청자의 가상계좌 예치금 지급동의가 없더라도 자동 지급동의 처리되어 참여기업으로 지급됩니다.
--	--

9.신재생에너지설비의 하자 발견 시 참여기업 또는 고장접수지원센터로 접수합니다.

 <고장접수 지원센터>	⇒신청자는 설비사용 매뉴얼을 항상 비치하고, 사용·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사용 중 설비의 하자 발생 시 참여기업으로 즉시 연락하여 조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하자보수이행증권을 확인하시고 보증기간 내에 고장발생 시에는 무상으로 수리하실 수 있으며 보증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유상으로 수리하셔야 합니다. ⇒시공한 참여기업이 폐업을 하거나 참여기업을 통해서 A/S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에 신재생에너지센터의 <u>고장접수지원센터(☎ 1544-0940)</u>로 연락하시면 A/S접수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고장접수지원센터 홈페이지 : http://ascenter.energy.or.kr/
--	---

정선군 공고 제2015-199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안)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5. 3. 12.

정 선 군 수

1. 목 적 :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자연재해를 사전 예방하거나 재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지정함.
2. 행정예고 기간 : 2015. 3. 12. ~ 4. 1.
3. 의견제출 기간 : 2015. 3. 12. ~ 4. 1.
4. 공고방법 : 정선군청 홈페이지
5.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6.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지정 대상지

지구명	위 치	지정개요			지정 사유	비고
		지정면적 (㎡)	유형	등급		
합 계	2개소					
세대2지구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485-1번지 일원	6,500	붕괴위험 지구	가	사면불안정으로 인한 상습적인 산사태 및 낙석발생으로 잦은 사고발생 등 인 명피해 우려가 높은 붕괴위험지역	
낙동2지구	정선군 남면 낙동리 산298번지 일원	7,000	붕괴위험 지구	가	사면불안정으로 인한 상습적인 산사태 및 낙석발생으로 잦은 사고발생 등 인 명피해 우려가 높은 붕괴위험지역	

7. 지구지정 후 정비계획

지구명	사업시기	사업예산(백만원)	사업내용	비고
세대2지구	2016년 이후	12,900 (시설비 12,040, 기타 860)	피암터널 L=280m, 도로확폭 L=320m	
낙동2지구	2017년 이후	8,800 (시설비 8,200, 기타 600)	피암터널 L=180m, 도로확폭 L=220m	

※ 사업시기는 예산(국·도비) 지원 계획에 따라 변동됨

8.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정선군청 안전건설과로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 편 : (우)233-70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안전건설과
- 전 화 : 033) 560-2496
- 팩 스 : 033) 560-2591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 불 임 1.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 각 1부(별첨)
2. 주민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붙임2]

주민의견제출서

공 고 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지 구 명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5년 아름 이름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정선군 남면 공고 제2015-1호

2015년 남면복지회관 상반기 교양강좌 수강생 모집 공고

☞ 교육기간 : 2015.04.01. ~ 06.30.(3개월)

☞ 모집대상 : 남면 면민 및 정선군 관내거주자

☞ 접수방법 : 본인 방문 접수(신분증 지참), 선착순

☞ 접수기간 : 2015.03.16. ~ 03.30.(공휴일 제외)

☞ 수 강 료 : 월 5,000원

☞ 강 좌 명 (※ 교육시간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 분	강 좌 명	시 간	강 의 실	인원	비고
일반	통 기 타	19:00~21:00(화, 목)	강당 등	15	28강
	요가댄스	14:00~16:00(월, 수)	강당 등	15	28강
	색 소 폰	19:00~21:00(수)	강당 등	15	16강

☞ 수강생 유의사항

- 1인 2과목까지 신청 가능하며, 재료 및 교재비는 수강생 본인 부담입니다.
- 등록인원이 모집인원의 70% 미만인 과목은 개설되지 않습니다.
- 개강 3일전 수강 취소나 강좌 미 개설 시 수강료 전액 환불합니다.
- 신청자 외 대리수강 및 청강은 불가합니다.
- 별도 개강식은 없으며 강좌별 해당 요일에 강의실 입실하여야 하며,
수강 중 지역 행사에 자율적 참여 부탁드립니다.
- 수강확정 : 3월 31일(개별 통보)

❖ 접수 및 문의처 : 남면사무소 2층 총무부서(☎ 560-2656, 2651)

정선군 남면 공고 제2015-2호

2015 남면복지회관 교양강좌 강사모집 공고

- 운영기간 : 2015.04.01. ~ 12.30.(기간 중 6개월)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며,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
- 운영장소 : 남면복지회관 강당
- 운영대상 : 정선군민(강좌별 정원 초과 시 남면주민 우선 선발)
- 강사모집 : 2강좌(통기타, 요가댄스)

강좌명	요일 및 시간	강의실	모집인원		비고
			강사	수강생	
통기타	(화, 목) 19:00~21:00	다목적실	1명	15명	총28강
요가댄스	(월, 수) 14:00~16:00	다목적실	1명	15명	총28강
색소폰	(수) 19:00~21:00	다목적실	1명	15명	총16강

※ 강좌 운영요일 및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운영방법 : 주 2회~3회 운영 ※ 단, 정원 미달 시 강좌 폐강조치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5.03.16.(월) ~ 03.30.(월)
- 접수방법 : 남면사무소 총무팀 방문 접수(문의 : 560-2656)
- 강사선정 : 『자체심사기준표』에 의함
- **모집인원 : 강사 3명(통기타, 요가댄스, 색소폰 각1명)**
- 확정통보일 : 2015.03.31.(휴대전화 메시지 등 개별 통보)
- 강사지원서류
 - ① 강사등록(채용)지원서 1부, ② 강사이력서 1부,
 - ③ 강의계획서 및 과목 소개서 각 1부, ④ 주민등록 등본 1부,
 - ⑤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

강사등록(채용) 지원서

사 진	성 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 소			
	주민등록번호		e-mail	
	신 청 과 목			
최종학력	학 교 과 (년 졸업, 수료)			
취 미		특 기		
현 근무처 및 소속		연락처		
자격증		면허증		
주요경력				
본인은 귀 남면복지회관의 ()과목 강사로 등록(채용)하고자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남면복지회관 운영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 강사등록지원서 1부, 이력서 1부, 강의계획서 및 소개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자격증, 면허증, 수료증, 경력증명서 등 해당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강 사 이 력 서

<개인사항>

(사 진) 반명함판 3.5cm×4.5cm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휴 대 전 화		비상연락처	
	e-mail			

<학 력>

년 월 ~	년 월	고등학교 졸업
년 월 ~	년 월	대학(교) 과 졸업
년 월 ~	년 월	대학교(대학원) 전공

<주요경력사항> ※강의경력 위주로 작성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자격사항>

취 득 일	자 격 증 명	발 행 처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강 의 계 획 서

• 과 목 명 :

• 강 사 명 :

과 목 소 개			
목표 및 방향			
강 의 계 획			
월 별	주 별	강 의 내 용	비 고
제1월	1주		
	2주		
	3주		
	4주		
	주		
제2월	1주		
	2주		
	3주		
	4주		
	주		
제3월	1주		
	2주		
	3주		
	4주		
	주		
제4월	1주		
	2주		
	3주		
	4주		
	주		

과 목 소 개 서

과 목 명	
과목소개	
교육내용	
교재명(가격)	
재료비용 (월 평균)	
수강생준비물	